#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_보건업[8시간]\_v5\_2025년 학습요약집

## 1차시. 재난안전과 대응방안

-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지변
- ■자연재난의 종류
- 태풍
- 홍수 및 호우
- 화재,폭발
-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의 내용
- 폭설, 눈사태
- ■대한민국 사회재난 사고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사고를 겪은 후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목적
- 노동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하시키고 안정화 함으로써 조기에 일상생활과 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노동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2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 불안이 심하거나 수면장애 등이 심한 경우 조기에 전문가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회사에서 재난 사고 후 CEO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야 하는 트라우마 관리 방법
- 상황을 파악하고 당장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확보
-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사고 내용을 공유
- 사고 관련 유언비어와 동요를 통제
- ■재난관리 단계의 내용
- 예방단계
- 대응 단계
- 복구 단계
-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 주민홍보계획

- 비상대피 후의 임무와 절차
- 피해자 구조 , 응급 조치 절차

### ■합동비상대응훈련의 시기

- 2회/년
- ⊙재난의 정의는 대규모 인위적 사고와 대규모 자연재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지역에 따른 자연재해 중에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겨울철에는 폭설로 눈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은 해안지역이 아니다.
- ①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등 여러가지 재난을 총칭하는 것은 인적재난과 산업재난 중 산업재난이 아니다.
- ⊙과거 조사에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범죄를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는데, 2014년 대형 재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인재가 범죄를 앞서게 되었다.
- ⊙미국에서는 심장질환 다음으로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꼽고 있다.
- ⊙재난관리 단계 중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한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정상 상태로 회복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로 재난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피해배상(보상), 자원봉사단 활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조사 및 대책 등이 있는 단계는 복구 단계이다.
- ①비상조치계획수립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업원 안전 확보, 생산기회 손실 최소화, 인근 주민 안전 확보, 설비손실 최소화, 공중 협력체화를 할 수 있다.
- ①비상조치계획은 모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여러 형태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 후에는 기능별 임무와 역할,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고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①자연재난, 재해와 인적재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인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에 진압해 비상사태의 확산을 줄인다. 사람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한다. 사고를 최대한 은폐하는 것이 아니다.
- ⊙지진사고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 오염된 지역을 판단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며, 사고지점 인근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 시에는 방독면이나 물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 노출을 방지하는 사고가 아니다.

## 2차시. 안전문화의 이해

- ■학자들이 안전문화처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개념의 의미
- 구성개념

- ■에드가 세인은 조직문화의 특성을 3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3개의 층과 내용
- 기본 가정
- 가치
- 인공물
- ■안전문화의 필요성의 내용
- 안전의식의 소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
-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 필요
- 안전사고의 위험요인 증가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문제점
- 규정에 없는 테스트
- 사고발생 후 사고 은폐
- 사고 후 처리 방식 미흡
- ■안전제일의 방침을 제일 먼저 선정한 USS의 경영방침
- 안전제일
- 품질제이
- 생산제삼
- ■듀폰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는 2가지
- 모든 상해/사고는 즉시 보고 되어야 한다.
- ■듀폰사의 안전문화 활동
- 사무실에 문턱이 없음
- 곳곳에 휴대용 소화기 비치
- 복도에서는 충돌 방지를 위해 볼록거울 설치
- ■볼보사의 안전문화 활동의 내용
- 모든 공정별로 5명의 안전점검자 배치
- 작업자의 상호 안전관찰
- 전 세계 사건사고 내용 공유
- ■브래들리 곡선의 단계
- 규칙에 따른 직업 안전
- 자기 책임에 기반한 독립적 안전 접근 방식
- 공유 책임에 기반한 상호 의존적 안전 접근 방식
-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안전문화 향상 방안
- 안전보건에 대한 열린 의사소통
- 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및 개선
- 작업장 위험 요인 및 위험 행동 모니터링
- ⊙안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알아야 하는데, 조직문화란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가 세인이 조직문화의 특성 3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중에 '가치'는 두 번째 층에서 그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는 것이며, 기본 가정에 기반을 두며, 동시에 조직의 시스템,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안전 문화(Safety Culture)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매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니다.

⊙안전제일은 생산제일, 품질제이, 안전제삼의 경영방침에서 발생하였고, 재해가 줄어들고 품질이 좋아졌으며 생산성이 향상된 경영방침을 위해 안전제일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다.

⊙업종은 바꾼다. 그러나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중국 화웨이 가 아니다.

⊙임원 검토 후 현장 직원들과 의견 공유를 하는 해외 안전문화 사례는 알코아이다.

⊙볼보자동차는 1927년 스웨덴 경제학자인 아서 가브리엘슨과 구스타브 라르손이 설립하였다. 볼보의 이름은 라틴어로 '자동차 사고는 어쩔 수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볼보 창립자인 구스타프 라르손과 아서 가브리엘슨은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한다"면서 "볼보에서 제작하는 모든 것은 돈, 즉 매출이라는 지상과제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①안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안전보건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열린 의사소통이다.

## 3차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이해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의 단계

-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내력

- 2단계 : 개인적 결함

-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에서 직접원인에 포함되는 내용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불안전한 행동의 특징

- 불안전한 작업자세
- 작업수행 중 과실

- 위험장소의 접근
- ■불안전한 상태의 특징
- 물체 및 설비 자체의 결함
- 방호조치의 부적절
- 보호구 상태 및 성능불량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
-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자 긴급구조
- 피해규모 및 피해자 신원 등 파악
-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면밀히 조사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상해종류
- 골절
- 절단
- 타박상
-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상해부위
- 눈,목,어깨
-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성명
- 입사일
- 성별
- ■재해조사의 목적
- 원인 규명
- 예방대책 마련
- 사고 통계 작성
-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 조사는 될 수 있는 대로 2인 1조로 실
-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
- ⊙정비 및 청소작업을 위해 해당 기계의 전원을 차단시킨 뒤,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Lock Out, Tag Out (LOTO)라 한다.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3일 이상의 휴업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그 즉시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자 구출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는 신체 일부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정보에 포함되는 휴업예상일수란 재해발생일을 포함한 5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말하지 않는다.
- ⊙재해조사 시에는 조사하는 사람의 현장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입장에서 조사하면 안된다.
- ⊙산업재해통계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을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산업재해통계식에 포함되는 강도율이란, 연간 총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를 뜻한다.
- ⊙근로손실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급은 14급이 아니다.
- ⊙Safe T Score 결정 값이 +2.00 ~ -2.00 사이라면, 판정결과는 안전성적이 과거와 별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4차시. 비상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 ■응급처치의 목적
-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
-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 장애의 정도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기기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다른 명칭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때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 30대 2
- ■질병관리청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가슴의 압박을 하는 데 있어 권고하는 깊이
- 5cm
- ■코 골절 시 발생하는 증상
- 코가 아프고 부어오르며 출혈이 있다
- ■척추 골절 시 발생하는 증상과 위험요인
- 척추가 손상되면 하반신 마비 등의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처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 목이나 다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다.
- 손가락과 발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이 없어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한다.
- ■재해 발생 시의 조치 순서
- 현장 조사 Check 구조요청 Call 환자 상태 파악과 기본 처치 환자의 안정

### ■출혈 시 처치

- 가능하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하고 쇼크 증상 관찰 및 쇼크 예방조치를 취한다.
- 국소 출혈 시에는 5분 이상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린다.
- 지혈대는 절단 등 생명이 위급할 때만 사용, 상처에서 심장 쪽으로 적용하며, 지혈대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2시간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붕괴사고 발생 시 비상 조치

-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대피 시 붕괴된 자재나 파편 등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조심해서 대피한다.

##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 시 비상조치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을 제거 또는 제독하기 전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물질 제거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 위치, 저장 방법, 물질 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 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 화학적 인자의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 ●늑골 골절 시 만약 늑골이 폐를 찔렀으면 거품기가 있는 선홍색의 피가 기침을 할 때 가래에 섞여 나오기도 한다.
- ●화상부위 체표면적이 성인 10%, 어린이 5% 이상일 때 쇼크 가능성이 크고, 체표면적의 10분의 1이면 극히 위험, 50% 이상이면 치명적이 아니다.
- ◉칼, 유리, 금속편 등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자상을 입은 경우라면 칼 등을 뽑지 않아야 한다.
- ⊙1도 화상인 경우는 바셀린 거즈나 윤활유를 발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액체 소화기의 경우 주성분이 액체라 전기실 화재에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의 농도는 10~18%로 유지하면 안된다.
- ◉화학적인자는 누출 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 ●피부의 상처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일 경우 지혈 처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외상이 없는 폐쇄성 골절의 경우에는 내부 출혈의 징후를 관찰하여야 한다.
- ●2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의식이 있으면 찬 소금물을 주고 쇼크, 감염, 탈수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한쪽만 다쳤다면 한 쪽 눈만을 가리면 안된다.

## 5차시. 화재폭발 사고예방\_교육 및 서비스업

### ■D급 화재

- 칼륨
- 리튬
- 마그네슘

## ■소화기의 사용방법

- 소화기 밑바닥을 손으로 받쳐든다.
-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다.

### ■불(연소)의 3요소

- 점화에너지
- 산소(공기)
- 가연물

## ■전기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소화기 종류

- C급소화기

### ■소화기의 종류

- 포말 소화기
- 산알칼리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신고요령 내용

- 비상사태 발생지역
- 비상사태의 종류와 상태
- 신고자의 소속과 성명

## ■일반화재에 대한 내용

- 나무, 종이 등 일반적인 가연성 물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상태
- 대부분의 화재가 A형에 해당
- 백색 연기가 특징

### ■유류화재 예방에 대한 설명

-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릴 때는 물이 끓어 넘쳐흐르도록 하면 안됨
- 석유난로, 석유버너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
- 석유난로나 석유버너 등을 켜놓은 채 절대로 집을 비워서는 안됨

### ■전기설비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

- 전기 스위치 부근에 인화성 물질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 임의로 전기 배선을 접속 사용하지 않는다.
- 스위치 개폐는 접속 부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접속한 다음 개폐해야 한다.

- ■화재발생 시 신고 및 대피요령
- 소방서에서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말아야 한다.
- 화재 경보기 스위치를 눌러서 모든 층에서 경보가 울리게 한다.
- 대부분의 화재는 2~3분이 골든타임이다.
- ⊙소화기의 화재적응성에 대한 화재구분은 국내의 경우 A급(유류화재), B급(일반화재), C급(통신화재) 화재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 ①소화기의 지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압력이 불충분하면 바늘이 노란색 부분을 가리킨다.
- ⊙소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화재는 실화 이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발화점(Ignition Point)은 외부 불씨와 접촉 시 연소가 개시될 수 있는 최저온도가 아니다.
- ⊙불이 났을 때는 가능하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고, 위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된다.
- ⊙볼록렌즈와 같이 태양광이 모이고 그 열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는 자연발화가 아니다.
- ⊙불이 났을 때 소화의 원리는 불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공기), 점화에너지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 ①비상 대피 요령으로 연기 속을 피난할 때에는 침착하고 신속한 태도로 안전한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하고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6차시. 업무상 질병사례\_보건업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 )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상당인과관계

- ■직업성 질병에 대한 설명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보건업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원인에 해당되는 것
- 병원체감염
- 높은 강도의 신체작업
- 관계 갈등
- ■보건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관절질환
- 근육질환
- 골격계질환
- ■보건업 근로자의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것
- 심근경색
- 뇌경색
- 뇌출혈
- ■업무상 질병의 요양범위에 해당되는 것
- 진찰
- 입원
- 수술
- ■업무상 질병의 유형
- 업무로 기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로 기인한 감염성 질환
- 업무로 기인한 근골격계 질병
- ■업무상 질병 예방법
- 보호구 착용
-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
- 안전보건 교육 이수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의 두 가지 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자격이 있다.

-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진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직업성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은 직업성 암에 해당한다.

## 7차시. 전염성 질환 예방

-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가리키는 병원체
- 결핵균
- 홍역바이러스
-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건강상의 문제
- 혈액매개 감염병
- 공기매개 감염병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적용범위 작업
-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 혈액의 검사 작업
-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종류로 공기매개감염병
- 결핵
- 수두
- 홍역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종류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예방조치
-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 착용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등 제한
-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실시
- ■혈액매개 감염병
- 인간면역결핍증

- C형간염
- 매독

#### ■혈액원성 병원체

- 진균
- 원생동물
- 프리온

### ■혈액노출 조사애 기록할 내용

- 노출자의 인적사항
- 노출 원인 제공자(환자)의 상태
- 노출자의 검사결과

#### ■채혈작업 종사 근로자의 안전조치 사항

-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 주사침 사용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에 담아 폐기

####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

- 사고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다.
- 사고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고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한다.
- ⊙쯔쯔가무시증의 증상으로 소화기 증상(구토, 설사, 복통)과 출혈증상(자반증, 허혈 등)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 ○공기매개 감염 노출 후 관리로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화자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 ⊙급성 미열로 시작되고 신체 전반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물집) 발생하는 공기 매개 감염병은 레지오넬라증이 아니다.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해도 홍역에 걸릴 수 있다.
- ⊙혈액매개감염 우려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매독은 모체에서 태아에게로 전파되거나 주사침 손상에 의해 감염되기도 한다.
- ⊙혈액취급 시 실험대, 후드 또는 분석장비에 혈액을 흘리거나 쏟았을 경우 소독제를 적신 흡수재로 신속히 닦아내야 한다.
- ⊙응급처치로 핀셋, 집게 등 사용한 도구는 환부 소독 실시 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 ⊙B형간염은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에 의해서는 감염된다.

## 8차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 사업장에서 자주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
- ■안전보건관리체제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총괄 관리책임을 맡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게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중 보호구의 지급
- 사업주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파손, 손상 시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으킬 소인을 가진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직업성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찍이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 근로자 건강진단
-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 1인 이상 사망자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작업장 내 정리 정돈과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의 안전 · 보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작업 설비의 안전 · 보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속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책임을 맡는다.
- ①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다.
- ①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다.
- ⊙사업주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사업주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 작업하는 근로자의 보호구가 파손, 손상되더라도 즉시 지급할 필요가 있다.
- ①간단한 소독이 필요한 부상자 1인 발생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근로자 건강진단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으킬 소인을 가진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직업성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찍이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